



문서번호 : 17-2-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1

수 신 : 각 언론사 제위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민변][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23

제 목 : 일 접견거부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진행 -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 채택여부 결정 예정

전송일자 : 2017. 2. 21.(화)

전송매수 : 총 2 매

[취재요청]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 23일 접견거부 취소소송 2차 변론기일 진행 - 종업원들에 대한 증인신청 채택여부 결정 예정

일 시 : 2017. 2. 23. (목) 오전 11시 10분

장 소 : 서울행정법원 B202호 법정(지하 2층)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4월 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이 집단 입국하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입소한 사실이 알려진 후 변호인단은 총 6차례에 걸쳐 접견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은 만날 수 없다,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면서 이를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3. 이에 지난해 8월 변호인단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해 12월 22일에 이어 오는 23일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변호인단은 종업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국정원은 종업원들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센터에 들어간 것이고 자발적인 의사로 접견을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업원들이 변호인단의 접견신청 사실과 접견신청 이유를 충실히 고지 받았는지, 자신들에게 접견신청권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그들을 수용하고 있던 국정원의 설명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종업원들

의 입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국정원의 접견거부처분이 위법하였는지 여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한 것입니다. 오는 2차 변론기일에서는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7. 2. 21.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